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백진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94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성백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오봉수, 김희걸, 최판술, 유동균,
유 용, 우창윤, 김진철, 한명희,
이순자, 이현찬, 김기대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르면, 서울시복지재단(이하 “복지재단”이라 함)은 각 회계연도의 ‘연간 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를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(제1항) 하고, ‘결산서류’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(제2항)하여야 함.

하지만, 서울시에 제출하는 상기의 ‘사업계획서’ 및 ‘예산서’의 제출 시한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·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. 마찬가지로 ‘결산서’의 제출기한의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이 매해 3월말 인 점과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시한의 경우에도 ‘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’ 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, 현행 조례상 제출기한은 실무적 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상황임.

따라서, 본 개정안은 이상과 같은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,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제1항 중 “시작 1개월 전까지”를 “시작 전까지”로 하고, “또한 같다.”를 “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2개월”을 “3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<u>시작 1개월 전까지</u>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<u>또한 같다</u>.</p> <p>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<u>2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<생략></p>	<p>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----- ----- ----- <u>시작 전까지</u> ----- ----- ----- <u>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-----</p> <p>②----- ----- ----- <u>3개월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 <생략></p>